

옥천군 공고 제2021-1154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 확대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대상 완화 및 중복조항 삭제(안 제6조)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확대(안 제9조)
 - 가. 경영관리 물품 및 안전·위생 시설 지원
-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 선발 기준 마련(안 제11조)

- 풀뿌리경제위원회 확대 구성(안 제16조)
-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

4. 개정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5조의2
-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영관리 물품 : 매출관리 프로그램 및 기기,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등

5. 안전·위생 시설 : 위험물 철거, 방화용품, 소독·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제11조제5항 중 “신청자가”를 “군수는”으로, “경우”를 “소상공인을 우선 선발하거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를

“소상공인 업무”로 한다.

제9장(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단체지원

제24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군에 설립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p> <p>2. ~ 5. (생략)</p> <p><u><신설></u></p> <p>제6조(지원대상자) ①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용보증기관 또는 군과 업무 협약한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로 한다.</p> <p>② 삭제</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p>	<p>제2조(정의) ----- -----.</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 5. (현행과 같음)</p> <p>6. “소상공인 단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제6조(지원대상자) ① --- <u>사업장</u> ----- ----- ----- ----- ----- ----- -----.</p> <p><u><삭제></u></p>

서 제외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9조(경영환경개선 사업 범위)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11조(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① ~ ④ (생략)

⑤ 신청자가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다.

⑥ (생략)

제9조(경영환경개선 사업 범위) -

-----.

1. ~ 3. (현행과 같음)

4. 경영관리 물품 : 매출관리 프로그램 및 기기,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등

5. 안전·위생 시설 : 위험물 철거, 방화용품, 소독·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제11조(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

----- 소상공인
을 우선 선발하거나 -----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신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 20명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소상공인 업무-----
-----.

제9장 단체지원

제24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군에 설립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